

제80회 이사회 회의록

1. 회의 소집 통지 연월일 : 2022년 1월 11일(화요일)
2. 회의 연월일 : 2022년 1월 18일(화요일) 19:00 ~ 21:00
3. 회의 장소 :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롯데호텔 36층 피콕스 스위트 회의실
4. 이사 정수 : 8명
5. 재적 이사 : 8명
6. 참석 이사 : 8명
이사장 김홍용 이사 : 양영희, 안관식, 윤인자, 함정희
김용재, 이정숙, 허인구
7. 결석 이사 : 0명
8. 참석 감사 : 2명
감사 : 이해준, 김재식
9. 참석 교직원 : 사무국장 김현재(간사)
10. 회의 안건
 - 1) 2021학년도 서정학원 법인비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 건.
 - 2) 2021학년도 서정대학교 학교비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 건.
 - 3) 2022학년도 서정학원 법인비 자금 예산(안) 심의 건.
 - 4) 2022학년도 서정대학교 학교비 자금 예산(안) 심의 건.
 - 5) 계약제 (특별채용포함) 전임교원 재임용 심의 건.
 - 6) 2022학년도 전임교원 신규채용 및 2021학년도 전임교원 신규채용 임용 추진 심의 건.
 - 7) 2022학년도 교직원 연봉책정 및 특별성과급 지급 심의 건.
 - 8) 2022학년도 전임교원 승진에 관한 심의 건.
 - 9) 서정대학교 정원조정의 건
 - 10) 서정대학교 중장기발전계획 고도화의 건
 - 11) 서정대학교 교지 확장 관련 MOU 체결의 건
 - 12) 학교법인 서정학원 정관 개정의 건

10. 회의내용

의 장 (이사장 김홍용) : 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는 코로나 19 유행이 지나가고 희망 찬 한 해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그동안 이사님들의 가정에도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셨으리라 믿으며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니 반갑습니다.

그럼 금일 이사회 회의 이사정수 8명 전원이 참석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회의에는 감사 두 분도 참석해주셨습니다.

안관식 양영희 김홍용

제1호의 안 2021학년도 서정학원 법인비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
건을 간사로 하여금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에 앞서 간사의
2021학년도 서정학원 법인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설명
을 들은 후 이사님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간 사 (사무국장 김현재) : 법인비 추가경정 예산(안)은 미리 검토해 보셨
겠지만 기재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조하시면서 설명을 경청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2021학년도 서정학원 법인비 추가경정예산(안)이 세입과 세출로 나
누어져 있습니다. 2021학년도 세입 내역을 보면 전입 및 기부수입, 교
육외 수입, 투자와기타자산수입, 미사용 전기이월자금으로 구성되어 있
고 세입 총금액 5,608,924,498원이며 세출 내역을 보면 보수, 관리운
영비, 교육외비용, 투자와기타자산지출, 고정자산매입지출, 미사용 차
기이월자금으로 세출 총 금액 5,608,924,498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
다.(항목별로 설명하다.)

서정학원 법인비 추가경정예산은 간단명료하게 편성되어 있기에 쉽
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사님들께서는 좋은 의견
이나 질문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 사 (이해준) :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살펴 본 바 법인비 추가경정 예산
(안)은 간결하게 구성 되어있고 이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의 장 (이사장 김홍용) : 이해준 감사님께서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본
안에 대해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제1호의 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이사님께서는 거수로 표하여 주시고 의견 있으시면 말씀 바랍니다.

참석이사 (전원) : (전원 거수로 찬성함)

의 장 (이사장 김홍용) : 이사님들께서 제1호의 안에 대해 전원 찬성하였
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제2호의 안 2021학년도 서정
대학교 학교비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 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 장 (이사장 김홍용) : 간사의 설명을 먼저 들은 후 본 안에 대해 심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 사 (사무국장 김현재) : 나누어 드린 자료를 참조하시면서 설명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2021학년도 서정대학교 학교비 추가경정 자금예산
(안)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본 추가경정 예산안에는 현재 제출
되어 있는 사학연금 법인부담금 학교부담 승인 사항을 반영하여 편성하였
습니다. 승인 내용이 변동되지 않으리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혹시 사학
연금 법인부담금액에 변동이 있다면 결산시 보고하고 추인 받도록 하겠습니
다. 내역에 따라 살펴보면 등록금, 전입 및 기부수입, 교육부대 수입,

간서명란		
안 관석	양 명희	김 홍 용

교육외 수입, 투자와 기타자산수입, 고정자산매각수입, 미사용 전기이월자금으로 총 65,182,303,029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그리고 학교비 세출항목 내용을 보면 보수, 관리운영비, 연구학생경비, 교육외 비용, 투자와기타자산지출, 고정자산매입 지출, 미사용 차기 이월자금으로 총액 65,182,303,029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로 자세히 설명하다.)

감 사 (김재식) : 감사님의 의견 잘 들었습니다. 설명을 들으니 이번 2차 추경안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 장 (이사장 김홍용) : 김재식 감사님께서 좋은 의견 주셨습니다. 제2호의 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이사님들께서는 거수로 표하여 주시고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 바랍니다.

참석이사 (전원) : (전원 거수로 찬성함)

의 장 (이사장 김홍용) : 이사님들 전원이 제2호의 안에 대해 찬성하였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제3호의 안 2022학년도 서정학원 법인비 자금예산 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자금예산(안)도 감사로부터 설명을 듣고 심의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 사 (사무국장 김현재) : 제3호의 안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여 드리겠으니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보시면서 경청 부탁드립니다.

2022학년도 세입 내역을 보면 전입 및 기부수입, 교육외 수입, 미사용전기이월자금으로 총 2,158,844,804원이며, 세출 내역을 보면 보수, 관리운영비, 미사용 차기이월자금으로 세출 총 2,158,844,804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항목별로 자세히 설명함.)

이 사 (함정희) : 2022학년도 법인비 자금예산 안에 대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제 생각은 학교법인 서정학원 법인비 자금예산의 항목이 명료하게 작성되었기 때문에 무수정 통과하여도 무리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의 장 (이사장 김홍용) : 함정희 이사님께서 주신 의견 외에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찬성 여부에 대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이사님들께서는 거수로 표해 주십시오.

참석이사 (전원) : (전원 거수로 찬성함)

의 장 (이사장 김홍용) : 그럼 제3호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인 제 4호의 안 2022학년도 서정대학교 학교비 자금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감사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듣고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이사님들에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서명란		
안 관석	양 영 희	김 홍 용

간 사 (사무국장 김현재) : 2022학년도 학교비 자금예산 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에 있어서 각 학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각종 실험실습 기자재 구입비, 실험실습비, 학생 장학금,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개보수 공사비, 구조개혁과 관련된 예산, 사학연금법인 부담금 학교부담금액 등 예산에 필요한 항목을 선정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항,목 별로 좀더 상세히 설명하여 드리겠으니 경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비 세입내역을 보면 등록금, 전입 및 기부수입, 교육부대 수입, 교육외 수입, 투자와 기타자산수입, 미사용 전기이월자금으로 총 71,641,608,652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그리고 학교비 세출항목을 보면 보수, 관리운영비, 연구학생경비, 교육외비용, 전출금, 예비비, 투자와기타자산, 고정자산매입, 미사용 차기이월자금으로 총액 71,641,608,652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정대학교 2022학년도 예산(안) 편성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 사 (윤인자) : 설명을 들어보니 2022학년도 학교비 자금예산안은 적절하게 편성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저는 2022학년도 서정대학교 학교비 자금예산안을 통과시킬 것을 제안합니다.

의 장 (이사장 김홍용) : 윤인자 이사님의 의견에 따라 표결로써 통과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이사님들께서는 거수로 표하여 주시고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 바랍니다.

참석이사 (전원) : (전원 거수로 찬성함)

의 장 (이사장 김홍용) : 제4호의 안에 대해 참석하신 이사들께서 전원 찬성하였으므로 2022학년도 서정대학교 학교비 자금 예산 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인 제5호의 안 계약제 전임교원 재임용 심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심의 건에 대해서 제가 먼저 설명 드리고 이사님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재직 중인 전임교원 중에서 재계약할 할 전임교원의 명단은 회의자료에 첨부하였습니다.

해당 교원들은 소속 학과 업무와 강의에 충실하고 대학발전에 협력하며 인사관리규정을 준수하여 성실히 근무하고 있기에 재임용 하고자 합니다. 이사님들께서 좋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서명란		
안 과석	양 영 희	김 홍 용

니다.

이 사 (허인구) : 이사장님 말씀에 저는 동의합니다.

이 사 (김용재) : 허인구 이사님 말씀에 동의하며 동의에 재청합니다.

의 장 (이사장 김홍용) : 허인구 이사님 동의, 김용재 이사님 동의에 재청
까지 하셨으니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이사님들께서는
거수로 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석이사 (전원) : (전원 거수로 찬성함)

의 장 (이사장 김홍용) : 그럼 이사님들께서 제5호의 안에 대해서 동의 하
였기에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6호의 안 2022학년도 전임교원 신규채용 및 2021학년도 전임교원
신규채용 임용 추진 심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해 제가
먼저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난 후 이사님들의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지난 이사회에서 저와 총장님에게 교원을 신규 채용할 수 있도록
위임하여 주신 바 있습니다. 이에 근거하여 2021학년도 신규 채용된
전임교원을 회의 자료에 첨부하였습니다.

금일 추진을 받고자 하는 대상자들은 인사관리규정 적용과 학과의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했고 적법한 절차에 의거해서 선발된 전임교원
이기에 이사님들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또한 2022학년도 교직원 신규 채용을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하
고자 하니 신규 채용할 교직원에 대한 선발 방법과 인원, 급여에 대
해 저에게 일체의 권한을 위임하여 주시면 채용 후 이사회에서 추진
을 받겠습니다.

이 사 (안관식) : 인사관리규정 적용과 적법한 절차에 의해 해당 과 교수
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선발한 전임교원이고, 부서 교직원
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선발하였다고 판단되므로 동의합니다.
또한 신규 채용 할 교직원도 합리적인 절차에 맞춰 선발하신다고 하
니 위임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의 장 (이사장 김홍용) : 안관식 이사님 의견 감사합니다. 이외에 이사 분
들께서 의견이 없으시면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이사님
들께서는 거수로 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석이사 (전원) : (전원 거수로 찬성함)

의 장 (이사장 김홍용) : 표결 결과 참석하신 이사님들 모두 찬성하였으므
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7호의 안 2021학년도 교직원 연봉책정 및 특별성과금 지급 심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해서는 양영희 총장님께서 설명해주
시겠습니다.

간서명란		
안 관 식	양 영 희	김 홍 용

총 장 (양영희) : 본 건에 대해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이 끝난 후 이사님들께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임교원의 연봉은 교원인사관리규정 및 교원 보수 규정을 적용해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22학년도에 신규채용 할 전임교원의 경우도 전년도 책정 방식을 준용하여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부처 및 학과에서 근무하는 교직원들의 보직 직책수당과 각종 제수당에 관해서도 규정에 맞게 합리적으로 결정하여 지급하고자 합니다. 2022학년도 교직원들의 연봉과 직책수당, 제수당, 특별성과급 결정에 대해서 저와 김홍용 이사장님에게 일체의 권한을 위임하여 주시면 규정과 절차에 따라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직원 중 한 사람인 제 연봉 조정에 대해서는 이사님들께서 결정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 장 (이사장 김홍용) : 본 건은 양영희 이사 본인의 총장으로서 연봉과 관련이 있는 안건이므로 양영희 이사께서는 잠시 퇴장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영희 이사 퇴장)

양영희 총장의 연봉 책정에 대해서는 제가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양영희 총장은 2020년 취임하여 2년 동안 많은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2021학년도 수도권 전문대 신입생 평균 총원율이 83%를 밑도는 가운데 1,000명 이상 모집 경기북부 전문대 중 유일하게 100% 총원을 달성하였고, 2021년 여름에는 개교 이래 처음으로 교육부 대학혁신지원사업 일반재정 지원대상에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양영희 총장의 성과와 2021학년도에 연봉을 동결했던 점을 감안하여 현재 대비 10% 연봉을 인상할 것을 그리고 총장에 대한 성과급은 2021학년도를 마치고 개최될 이사회에서 결정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제 설명을 마치고 이사님들의 좋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 (윤인자) : 규정과 절차에 따라 교직원들의 연봉과 직책수당, 제수당, 특별성과급을 지급하고, 양영희 총장의 성과를 반영해 총장 연봉을 10% 인상한다는 말씀이므로 저는 동의합니다.

이 사 (안관식) : 윤인자 이사님 말씀에 동의하며 동의에 재청합니다.

이 사 (이정숙) : 삼청입니다.

의 장 (이사장 김홍용) : 이사님들께서 삼청까지 하셨으니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이사님들께서는 거수로 표하여 주십시오.

참석이사 (전원) : (전원 거수로 찬성함)

의 장 (이사장 김홍용) : 참석하신 이사님들께서 본 안건에 대해 동의하였

간서명란		
안관식	양영희	김홍용

기에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양영희 이사 입장)

제8호의 안 2022학년도 전임교원 승진에 관한 심의 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해서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2022학년도 교수, 부교수 승진은 교원인사관리규정과 대학교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반영한 승진심사를 통해 결정됩니다. 승진 대상자와 승진인원 등 제반사항에 대해서 저와 양영희 총장님에게 일체 권한을 위임하여 주시면 규정과 절차에 맞게 처리하고 추진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들께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 (윤인자) : 이사장님 말씀에 동의하며 이러한 제반 사항에 대해서 이사장님과 총장님에게 결정 권한을 위임하는데 찬성합니다.

이 사 (안관식) : 윤인자 이사님 말씀에 동의하며 동의에 재청합니다.

이 사 (이정숙) : 삼청입니다.

의 장 (이사장 김홍용) : 윤인자 이사님 동의, 안관식 이사님 동의에 재청, 이정숙 이사님께서 삼청까지 하셨으니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이사님들께서는 거수로 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석이사 (전원) : 거수로서 찬성하다.

의 장 (이사장 김홍용) : 참석하신 이사님들께서 전원 제8호의 안에 대해서 동의 하였기에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제9호의 안 서정대학교 정원 조정 심의 건을 상정합니다. 양영희 총장님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총 장 (양영희) : 본 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향후 급격하게 줄어드는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하기 위해 학과별 경쟁력 강화 및 보건의료 계열 정원 배치와 관련하여 2023학년도 정원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총 정원 및 학과별 정원 조정내용은 참고자료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향후 교육부의 지침등에 따라 학과별 입학정원 조정내용이 적은 범위 내에서 변경될 수 있으니 이에 대한 일체의 권한을 제게 위임하여 주시면 추후 이사님들께 변경된 내용에 대해 추진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 (김용재) : 서정대학교의 미래를 대비하여 정원을 조정하는 것이기에 동의합니다.

이 사 (허인구) : 김용재 이사님 말씀에 동의하며 동의에 재청합니다.

의 장 (이사장 김홍용) : 재청이 있었으니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이사님들께서는 거수로 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석이사 (전원) : (전원 거수로 찬성함)

의 장 (이사장 김홍용) : 참석하신 이사님들께서 전원 제9호의 안에 대해서 동의 하였기에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제10호의 안

간서명란		
안 관 식	양 영 희	김 홍 용

서정대학교 중장기발전계획 고도화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도 양영희 총장님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총 장 (양영희) : 이 안건은 기존에 수립하였던 서정대학교의 중장기발전계획을 수정 보완하고 고도화하는 건입니다. 우리 대학이 경쟁력 있는 대학교로 도약하기 위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며 자세한 내용은 회의자료 참고 부탁드립니다.

의 장 (이사장 김홍용) : 서정대학교 중장기발전계획 고도화에 대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이사님들께서는 거수로 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석이사 (전원) : (전원 거수로 찬성함)

의 장 (이사장 김홍용) : 참석하신 이사님들께서 전원 제10호의 안에 대해서 동의 하였기에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제11호의 안 서정대학교 교지 확장 관련 MOU 체결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도 양영희 총장님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총 장 (양영희) : 이 안건은 서정대학교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 교통이 편리한 위치로 교지를 확장하기 위한 사전작업으로 관련 기관과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건입니다. 확장 예정 위치 및 MOU 체결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회의자료 참고 부탁드립니다.

이 사 (함정희) : 자료를 보니 꼭 필요한 MOU 체결 건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저는 본 안건을 통과시킬 것을 제안합니다.

의 장 (이사장 김홍용) : 함정희 이사님의 의견에 따라 표결로써 통과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이사님들께서는 거수로 표하여 주시고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 바랍니다.

참석이사 (전원) : (전원 거수로 찬성함)

의 장 (이사장 김홍용) : 참석하신 이사님들께서 전원 제11호의 안에 대해서 동의 하였기에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제12호의 안 학교법인 서정학원 정관변경 심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우리 법인의 정관을 검토한 결과, 사문화된 규정이 많아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사문화된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며 정관 변경사항은 참고자료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법인 정관의 시행 시기는 2022년 2월 1일로 하려고 합니다.

이 사 (윤인자) : 규정을 명료화하기 위한 정관 변경이므로 동의합니다.

이 사 (함정희) : 윤인자 이사님 말씀에 동의하며 동의에 재청합니다.

이 사 (허인구) : 삼청입니다.

의 장 (이사장 김홍용) : 이사님들께서 동의, 재청, 삼청까지 하셨으니 표

간서명란		
안 찬수	양 영 희	김 홍 용

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이사님들께서는 거수해주시요.

참석이사 (전원) : (거수로 찬성을 포함)

의 장 (이사장 김홍용) : 참석하신 이사님들께서 제12호의 안에 전원 찬성 하였기에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회의 안건 중에서 질문이 나 좋은 의견이 있으십니까?

참석이사 (전원) :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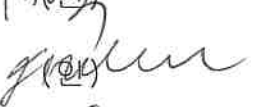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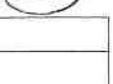
의 장 (이사장 김홍용) : 마지막으로 이사님들의 편의를 위해 회의록에 간서명을 이사 분들 중 세 분께만 받으려고 합니다. 간서명할 대표 자 선임에 대한 의견 있으십니까?

이 사 (이정숙) : 회의록에 간서명할 대표자로 김홍용 이사장님, 양영희 이사님 그리고 안관식 이사님으로 선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참석이사 (전원) : 찬성합니다.

의 장 (이사장 김홍용) : 장시간에 걸쳐 회의에 임하여 주신 이사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회의를 마치고 하겠습니다. 참석하신 이사님들께서는 회의록에 서명 날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1월 18일

이 사 장	김 홍 용	
이 사	안 관 식	
이 사	양 영 희	
이 사	류 민 자	
이 사	이 정 숙	
이 사	함 정 희	
감 사	김 재 석	
감 사	이 해 린	
간 사	김 현 제	
이 사	최 인 구	

간서명란		
안 관 식	양 영 희	김 홍 용

학교법인 서정학원 정관 변경(안)

현행	개정안	비 고
제4조 (주소) 이 법인의 사무소는 경기도 양주시 은현면 <u>화합로 1049-56</u> 에 둔다.	제4조 (주소) 이 법인의 사무소는 경기도 양주시 은현면 <u>서정로 27</u> 에 둔다.	
제34조 (수익사업체의 주소) 제33조의 수익사업소 주소는 경기도 양주시 은현면 <u>화합로 1049-56</u> 및 수익성이 있는 적합한 장소에 둔다.	제34조 (수익사업체의 주소) 제33조의 수익사업소 주소는 경기도 양주시 은현면 <u>서정로 27</u> 및 수익성이 있는 적합한 장소에 둔다.	
제39조의8 (교원인사관리규정) ①교원의 임면에 관하여 정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정관을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은 <u>정관세칙규정</u> 으로 정한다.	제39조의8 (교원인사관리규정) 교원의 임면에 관하여 정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정관을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은 <u>교원인사관리규정</u> 으로 정한다.	
제65조 (자격) ①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u>사무직원(기능직 및 고용직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일반직원”이라 한다)</u> 으로 임용될 수 없다. ② <u>일반직원</u> 의 신규임용에 있어서는 학력에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다만, <u>기술직 및 기능직</u> 은 임용될 직종에 관한 자격증·면허증·기타 임용권자가 필요로 하는 자격이 있는 자를 인사 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임용할 수 있다. ③재직중인 <u>일반직원</u> 이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게 될 때에는 당연 퇴직한다.	제65조 (자격) ①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u>직원</u> 으로 임용될 수 없다. ② <u>직원</u> 의 신규임용에 있어서는 학력에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다만, <u>전문 기술, 기능 및 자격</u> 을 요하는 직종에 대하여는 <u>직종 관련</u> 자격증, 면허증, 기타 임용권자가 필요로 하는 자격이 있는 자를 인사 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임용할 수 있다. ③재직중인 <u>직원</u> 이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게 될 때에는 당연 퇴직한다.	
제66조 (임용) ① <u>일반직원</u> 의 신규임용·승용·승진·승급·전직·전보·강임·휴직·직위해제·복직·면직·해임 및 파면(이하 “임용”이라 한다)은 임용권자가 공개채용·전형 또는 근무성적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 ③ <u>일반직원</u> 은 이사장이 임용하되, 학교소	제66조 (임용) ① <u>직원</u> 의 신규임용·승진·승급·전직·전보·강임·휴직·직위해제·복직·면직·해임 및 파면(이하 “임용”이라 한다)은 임용권자가 공개채용·전형 또는 근무성적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 ③ <u>직원</u> 은 이사장이 임용하되, 학교소속 직	

현행	개정안	비 고
속 일반직원은 당해 학교의 장의 제청이 있어야 한다.	원은 당해 학교의 장의 제청이 있어야 한다. 다만, 계약직 직원 임용에 관하여는 학교의 장이 따로 정하여 시행 할 수 있다.	
제67조 (복무) 일반직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제67조 (복무) 직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제68조 (보수) 일반직원의 보수는 일반의 표준생계비 및 민간인의 임금 등을 고려하여 직무의 난이성 및 책임의 정도에 따라 적당하도록 직급 및 근속기간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인사규칙으로 정한다.	제68조 (보수) 직원의 보수는 일반의 표준생계비 및 민간인의 임금 등을 고려하여 직무의 난이성 및 책임의 정도에 따라 적당하도록 직급 및 근속기간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인사규칙으로 정한다.	
제69조 (신분보장) 일반직원의 신분보장에 관하여는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제69조 (신분보장) 직원의 신분보장에 관하여는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제70조 (정년) 일반직원 등의 정년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일반직 5급이상(사무관, 서기관, 부이사관)의 정년은 만 60세로 한다. 2. 일반직 5급미만(주사, 주사보, 서기, 서기보)의 정년은 만57세로 한다. 3. 기능직(전체), 고용직(전체), 운전기사보, 목공기사보, 건축기사보, 전기기사보, 수도기사보의 정년은 만55세로 한다.	제70조 (정년) 직원의 정년은 국가공무원법 제74조를 준용한다.	
제71조 (명예퇴직 수당) 명예퇴직 수당의 지급에 대한 실시시기·지급대상·지급액·지급절차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71조 (명예퇴직 수당) ①직원으로 20년이상 근속한 자가 정년전에 자진퇴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명예퇴직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대학의 구조조정 등으로 인하여 자진퇴직을 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퇴직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72조 (징계 및 재심청구) ①일반직원의 징계는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	제72조 (징계 및 재심청구) ①직원의 징계는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하는	

현행	개정안	비 고
하는 규정을 준용하되, <u>일반직원징계위원회</u>는 법인에 따로 두어야 한다. ②<u>일반직원</u>의 재심청구를 위하여 법인에 <u>일반직원재심위원회</u>를 두되, 그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규정을 준용하되, <u>직원징계위원회</u>는 법인에 따로 두어야 한다. ②<u>직원</u>의 재심청구를 위하여 법인에 <u>직원재심위원회</u>를 두되, 그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73조 (법인사무조직) ①이 법인의 업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법인사무국을 두며, 국장은 <u>참사로 보한다</u>. ②법인 사무국에는 총무과와 관리과를 두며 각 과장은 <u>부참사로 보한다</u>.	제73조 (법인사무조직) ①이 법인의 업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법인사무국을 두며, 국장은 <u>교원 또는 직원으로 보한다</u>. ②법인 사무국에는 총무과와 관리과를 두며 각 과장은 <u>교원 또는 직원으로 보한다</u>.	
제75조 (하부조직) ①전문대학에 사무처·교무처·학생복지처·<u>기획(실)처</u>·입학학사처·대외협력처·국제교류처·평생직업교육처 등을 둘 수 있다. ②행정부총장, 사무국장, 사무처장, <u>기획(실)처장</u>, 입학학사처장, 대외협력처장, 국제교류처장은 교수 또는 <u>일반 직원</u> 중에서 임기를 정하여 임명할 수 있고, 교무처장, 학생복지처장, 평생직업교육처장은 <u>교원</u>으로 겸보한다.	제75조 (하부조직) ①전문대학에 사무처·교무처·학생복지처·<u>기획조정(실)처</u>·입학학사처·대외협력처·국제교류처·평생직업교육처 등을 둘 수 있다. ②행정부총장, 사무국장, 사무처장, <u>기획조정(실)처장</u>, 입학학사처장, 대외협력처장, 국제교류처장은 교수 또는 <u>직원</u> 중에서 임기를 정하여 임명할 수 있고, 교무처장, 학생복지처장, 평생직업교육처장은 <u>교원</u>으로 겸보한다.	
제77조 (도서관) ①도서관은 수서과·열람과를 두며 수서과장은 부참사로 보하고, 열람과장은 사서자격증을 소지한 일반직원 또는 <u>교원</u>으로 보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장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삭제”	
제80조 (정원) 법인 및 학교에 두는 <u>일반직원</u>의 정원은 각각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제80조 (정원) 법인 및 학교에 두는 <u>직원</u>의 정원은 각각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u>다만, 학교에 두는 직원의 직급별 정원은 총장이 규칙으로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u>	
【별표 1】 법인 일반직원 정원 총계 <u>16</u> 명	【별표 1】 법인 직원 정원 총계 <u>8</u> 명	

현행	개정안	비 고
일반직계 8 명 2급 (이 사 관) 1명 3급 (부이사관) 1명 4급 (서 기 관) 1명 6급 (주 사) 1명 8급 (서 기) 2명 9급 (서 기보) 2명 기능직 및 고용직 계 8 명 7등급 1명 8등급 1명 9등급 2명 10등급 2명 고용1종 1명 고용2종 1명	일반직계 8 명	
【별표 2】 대학 일반직원 정원 총 계 70명 일 반 직 계 47명 2급 (이 사 관) 1명 3급 (부이사관) 1명 4급 (서 기 관) 1명 5급 (사 무 관) 3명 6급 (주 사) 3명 7급 (주 사 보) 5명 8급 (서 기) 5명 9급 (서 기 보) 5명 <u>일반 계약직(임시직 포함) 23명</u> 기능직 및 고용직 계 23명 기능직 7등급 2 명 기능직 8등급 2 명 기능직 9등급 2 명 기능직 10등급 3 명 고용직 1종 4 명 고용직 2종 4 명 운전기사보 2 명	【별표 2】 대학 직원 정원 총 계 40명 일 반 직 계 30명 기술직 계 10명	

현행	개정안	비 고
목공기사보 1 명 건축기사보 1 명 전기 기사보 1 명 수도기사보 1 명		
	부 칙 ①(시행일) 이 정관은 2022년 02월 01일부터 시행한다.	